

청주교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정 2004. 6. 21. 규칙 제1117호
전면개정 2020. 6. 8. 규칙 제153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직원 등의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장려하며,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처분과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등"이라 함은 청주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 조교 및 직원
2.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식물신품종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특허법 등”이라 한다)등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품종, 노하우 등(이하 “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청주교육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 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나. 교직원 등이 외부의 재원을 지원받아 창작하게 된 발명다. 법률의 규정 및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청주교육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
4.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3호에 따른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5.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하며, 2인 이상의 공동 발명 시 발명에 대한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 발명자"로 한다.
6. "외부 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7. "노하우"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8. "기술이전"이라 함은 지식재산이 양도, 실시 허락, 기술지도, 산업자문,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의 취득·관리·처분·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사무담당)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업무는 청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담당한다.

제2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5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청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한다.

② 교직원 등이 외부 발명자와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발명자가 이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인의 지분에 대한 승계요청 시 이를 승낙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은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제2조제3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발명을 신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내용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③ 제2항의 직무발명 신고서류를 접수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선행 기술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과 제3항의 직무발명 신고서류를 활용하여 특허취득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승계 및 특허출원)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때에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발명자에게 통보하며, 통보 시점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산학협력단에 승계한 것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발명으로 본다.

제9조(국내외 특허출원 비용 부담) ① 국내외의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구비에 계상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필요경비를 불가피하게 연구비에 계상하지 못한 경우 산학협력단이 출원·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이상의 경비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업과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기업이 취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이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의 권리 분석, 기술 평가 등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명자로 하여금 자기 책임 하에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대리인(변리사)을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변리사지정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의 유지) ①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한 지식재산권은 출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유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2년마다 심의를 통해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연차등록료의 납부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지식재산권의 포기 사유를 발명자에게 통지하고 발명자가 권리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11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설치)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교무처장, 학생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이 지명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
2.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3. 지식재산권 이전·거래 및 활용
4.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
5.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사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명자와 발명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심의의 대상이 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장 기술이전

제14조(기술이전 및 실시계약) ①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 또는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이전표준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지급 기준) ①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에 의해 기술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대가로 받은 실시 기술료에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기술 이전에 소요된 이전 비용을 제외한 순 실시 기술료 수입금을 별표 1의 “발명 등의 실시 기술료 배분 기준”에 의거 발명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명신고서에 명시된 발명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1항의 이전 비용에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와 기본기여금과 기술이전보상금을 포함하며, 기본기여금과 기술이전보상금의 징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기여금 : 실시기술료 총액의 3%(최저 50만원, 최대 200만원)

2. 기술이전보상금 : 기본기여금의 10%

③ 제1항의 실시 기술료의 배분에 관한 사항이 다른 연구 지원 기관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명시된 경우에는 연구 지원 기관의 몫을 제외한 순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 규정의 실시기술료는 누적 금액으로 산출한다.

제16조(자유발명으로 전환된 지식재산권의 실시 기술료) 제10조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 유지를 포기하여 자유발명으로 전환된 지식재산권을 발명자의 요청으로 산학협력단이 수요자에게 기술을 이전하여 얻은 실시기술료는 제16조 “별표 1의 ‘발명 등의 실시 기술료 배분기준’ 제4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7조(기술료 지급기간) ① 실시기술료 수급권은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하며,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② 퇴직한 발명자 또는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있어 관련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통지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의무) ① 교직원 등은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및 처분 또는 이전 및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8. 규정 제1539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포일 이후 계약되는 기술이전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발명 등의 실시 기술료 배분 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실시기술료 수입 사유별	1천만원 이하까지		1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		5천만원 초과분	
	발명자	산학 협력단	발명자	산학 협력단	발명자	산학 협력단
1. 산학협력단이 특허권을 승계하고, 출원비용을 발명자가 전부 부담한 특허	90%	10%	80%	20%	70%	30%
2. 산학협력단이 특허권을 승계하고, 출원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특허	80%	20%	70%	30%	60%	40%
3. 산학협력단이 특허권을 승계하고, 출원비용의 전액을 부담한 특허	70%	30%	60%	40%	50%	50%
4. 특허권이 없는 Know-How 또는 소프 트웨어 등의 실시기술료	70%	30%	70%	30%	70%	30%

- ※ 1. 특허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2. 실시기술료 지급 방식은 Scale Slide 방식으로 계산함

(예시 1) 1호의 경우(발명자가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의 전액을 부담)

1. 기술료 순수입액이 4,000만원인 경우

구 분	1,000만원까지	1,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까지 (4,000만원-1000만원=3,000만원)	기술료 실배분액
발명자	1,000만원*90%=900만원	3,000만원*80%=2,400만원	900만원+2,400만원=3,300만원
협력단	1,000만원*10%=100만원	3,000만원*20%=600만원	100만원+600만원=700만원
계	(1,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2. 기술료 순수입액이 6,000만원인 경우

구 분	1,000만원까지	1,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까지	5,000만원 초과분	기술료 실배분액
발명자	1000만원*90%=900만원	4,000만원*80%=3,200만원	1,000만원*70%=700만원	900만원+3,200만원+700만원 =4,800만원
협력단	1000만원*10%=100만원	4,000만원*20%=800만원	1,000만원*30%=300만원	100만원+800만원+300만원 =1,200만원
계	(1,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6,000만원)

(예시 2) 제2호의 경우[산학협력단과 발명자가 출원 비용을 50%씩 부담]

1. 기술료 순수입액이 4,000만원인 경우

구 분	1,000만원까지	1,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까지 (4,000만원-1000만원=3,000만원)	기술료 실배분액
발명자	1,000만원*80%=800만원	3,000만원*70%=2,100만원	800만원+2,100만원=2,900만원
협력단	1,000만원*20%=200만원	3,000만원*30%=900만원	200만원+900만원=1,100만원
계	(1,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2. 기술료 순수입액이 6,000만원인 경우

구 분	1,000만원까지	1,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까지	5,000만원 초과분	기술료 실배분액
발명자	1000만원*80%=800만원	4,000만원*70%=2,800만원	1,000만원*60%=600만원	800만원+2,800만원+600만원 =4,200만원
협력단	1000만원*20%=200만원	4,000만원*30%=1,200만원	1,000만원*40%=400만원	200만원+1,200만원+400만원 =1,800만원
계	(1,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6,000만원)

<별지 제1호 서식>

발명 신고서					
발명의 명칭		국문 : 영문 :			
발명자	성명	지분(%)	소속 학과	전화번호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관련 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지원기관(센터)	지원기관(센터) 지분	
출원 희망 국		공동출원여부/ 실시계약여부	[]공동출원/ []실시계약 -공동출원인 명칭		
발명의 공개여부	1. 발표형식: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2. 발표일 : 년 월 일 3. 발표내용 : (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신규성, 진보성)				권리승계	
상기의 발명을 청주교육대학교 <u>지식재산권</u> 규정에 의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청주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 공동출원인 경우 실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체결된 실시계약서 사본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권리승계합의서				
발명 명칭				
출원번호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소	
	기타 :			
	양수인	성명	청주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		
위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을 청주교육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에 의거 청주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 지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청주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발명내용 설명서

1. 발명의 명칭

국문 :

영문 :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예 : 도1은 ○○○의 사시도이다)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3.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3.2 그 분야의 종래기술의 문제점

3.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목적)

3.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

3.5 발명의 효과

4. 특허청구범위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선 행 기 술 조 사 서

1) 선행기술과의 대비		
기존특허 (명칭,특허번호,일자)	본 발 명	
	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새로운 점을 기재)	진보성 (창작수준의 난이도 기재)

2) 관련자료 (참고문헌, 학회지 등)		
관련자료 (문헌명, 저자, 페이지)	기술요약	본 발명의 특징 (참고문헌과 비교)

<별지 제5호 서식>

변리사 지정 신고서

1. 발명의 명칭

국문 :

영문 :

2. 발명자

상기 발명의 특허출원 등을 위한 대리인으로 아래 변리사를 선임함.

☐ 변리사 사무소 :

☐ 담당 변리사 :

☐ 연락처

○ 주 소 :

○ 이메일 :

○ 전화번호 :

☐ 대표발명자

○ 소 속 :

○ 성 명 : (인)

청주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기술 이전 표준 계약서

(기술명 :)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가 개발하여 청주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이하, '갑'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 "에 관하여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실시권을 허여하고자 한다. 이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기술을 을로 하여금 본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전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는 본 기술의 이전 목적은 별첨 기술이전계획서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의 미로 사용된다.

1. '특허기술'이라 함은 어떤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특허 등록된 기술을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특허품'이란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실시기간'이란 본 계약에 의해 본 기술의 실시가 허여된 기간을 의미한다.
5. '실시지역'이란 본 계약에 의해 본 기술의 실시가 허여된 지역을 의미한다.
6. '실시내용'이란 본 계약에 의해 본 기술의 실시가 허여된 범위를 의미한다.
7. '기술전수지도'라 함은 본 기술의 원만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 연수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8. '기술의 개량'이라 함은 본 기술을 활용하여 상당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기술을 의미한다.
9. '판매수입액'이란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물품의 국내·외 총 판매액을 말한다.

제3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갑이 출원 또는 등록하거나 갑이 실시권을 허락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된 기술 또는 Know-How로서 아래에 명시한 것을 말하며, 본 기술 이외의 파생기술이나 개량기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계약의 기술은 향후 산업재산권의 등록, 유지 또는 무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대상기술 : 기술의 명칭.....(특허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로 특정)

2. 관련 Know-How(있는 경우) :

제4조(의무 이행)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을**로부터 **갑**이 제공한 기술 실시에 관하여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하며, **을** 또한 필요한 사항을 **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갑**으로부터 본 기술의 실시권을 허여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실시에 대한 증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고, 확보된 증거에 대하여는 상호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연구 활동 또는 경영상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의 일반적인 연구 활동과 **을**의 일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유효하다.

⑤ **을**은 기술에 대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 유출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단, **을**은 본 기술의 실시를 위하여 임/직원, 대리인, 피고용인, 재실시권자에게 특허기술 및 관련 Know-How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본 기술의 비밀보장을 위한 필요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해 상대방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한다.

제 2 장 실시권의 허여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또는 ○년간)으로 하며, 계약 종료일까지의 본 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획득 및 유지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을**이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 의사를 **갑**에게 표시하여 계약만료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을**은 본 기술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조(실시권의 허여) ①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기술을 대한민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상 또는 전용) 실시권을 허여한다. 단,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허여하는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기술자료 및 기술정보는 **갑**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별첨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와 같다. 또한, **갑**은 본 기술자료 및 기술정보를 기술문서나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서 **을**에게 제공한다.

③ **갑**은 본 기술을 현재 있는 상태로 **을**에게 제공하며, 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경제성 및 판로시장 개척 또는 영업에 대하여 **갑**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본 기술 중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제 3 장 기술료 등

제7조(기술료 등) ① 기술료는 착수기본료 및 매출정율사용료로 구성된다.

② **을**은 착수기본료로 금○○○○원정을 **갑**에게 지급한다.

③ **을**은 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정율사용료로 국내의 판매수입액의 ○%를 **갑**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의 매출정율사용료의 최저실시료는 금○○○○원정으로 하며, 매출정율사용료가 최저실시료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실시료를 매출정율사용료로 간주한다.

⑤ **갑**이 **을**에게 본 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문 또는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기술료 이외에 기술자문료 또는 기술지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료 또는 기술지원료는 실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기술료 등의 지급방법) ① **을**은 제7조 제2항의 착수기본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제2차, 제3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한 내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위해 **을**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본 계약 체결시 **갑**에 제출하여야 하며, **갑**에 기 납부한 기술료에 대하여는 **갑**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차분 : 금○○○○원정 (본 계약 체결시)

2. 제2차분 : 금○○○○원정(본 계약 체결후 60일이내, 또는 년 월 일 까지)

3. 제3차분 : 금 ○○○○원정 (시제품 생산 후 10일 이내, 또는 ○○○○년 ○○월 ○○일 까지) 이와 관련하여 **을**은 본 계약 후 ○○○일 이내에 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의 변경은 **을**의 서면 요청으로 쌍방 간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7조 제3항의 매출정율사용료를 판매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년 ○월말까지 **갑**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을**은 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상품 생산 개시일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갑**은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의 연체이자율은 지급 당시에 **갑**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대출 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매출정율사용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동안 **을**이 **갑**에 매출정율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향후 발견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당해 연도 매출정율사용료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에 의해 **갑**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원천 과세될 세금은 세금 고지서상의 부과의무자로 규정된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판매수입액의 계산기준) ① 제7조 제3항의 판매수입액은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한다. 또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수입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출액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고, 매출액 명세서로서도 판매수입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 · 판매하는 제품을 타 주요부품 또는 타 단위제품과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 · 판매하는 제품이 단독으로 판매될 때의 시장가격을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현재의 국내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의 평균 국제 시장가격으로 한다.

제10조(판매수입의 회계자료)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월 ○일까지 제9조의 기준에 의한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연간 판매수입액을 증빙하는 판매제품의 유형 및 제조원가, 매출액이 기재된 회계자료를 **갑**에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지급될 실시료의 총액에 관한 회계자료 및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판매수입액과 관련한 회계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이 판매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장부의 검사를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중에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수입액계산의 조사) ① **갑**은 **을**이 제10조에 의해 제출한 판매수입액 증빙서류가 제9조에 의한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인 공인회계사를 위촉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수입을 조사하고, 판매수입을 결정하여 제9조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공인회계사는 판매수입의 결정을 위하여 통상근무시간 중에 **을**의 필요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을**은 공인회계사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거 위촉된 공인회계사의 조사결과 제10조에 의해 제출된 판매수입 회계자료 등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을**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갑**은 공인회계사 위촉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갑**이 조사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전 각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 장 기술 전수 지도

제12조(기술전수 기간) 본 계약의 기술전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의 기술전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전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기술전수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전수의 범위) 본 기술전수 지도의 범위는 별첨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와 같다.

제14조(기술전수 비용) 기술전수지도비는 **갑**의 기술을 이전할 기술발명자가 산정한 실 소요비용을 토대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기술전수 비용의 지급 방법) ① **을**은 본 계약체결시 (또는 체결 후 ○○일 이내)에 기술전수 비용으로 금○○○○○○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기술전수 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로 기술전수를 중단하거나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술전수 비용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6조(피기술 전수요원 및 장비교체) ① 기술지도에 필요한 제반 소요자재, 장비는 **을**이 일괄

제공한다. 단, 필요시 **갑**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시험 등을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기술전수 지도기간 중 필요에 따라 피기술전수요원 및 장비 등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일(통상 30일) 이내에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기술지도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의해 정할 수 있다.

제 5 장 기술의 개량

제17조(기술의 개량 등) ① **갑**이 본 기술에 대하여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을**은 본 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실시권을 갖는다. 다만, 산업재산권의 출원, 보정, 등록, 유지, 실시권 설정등록, 명의이전 등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본 기술을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한 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타 기술에 적용하거나 이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을**의 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출원하고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량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출원,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서류 제출, 수속 등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쌍방이 공동 부담한다.

④ 제2항의 개량기술 여부에 대하여 **을**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개량기술이 아님을 **을**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의 보완) ① **갑**은 본 기술과 관련하여 본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이외의 기술 및 기술전수 지도기간 이후의 기술보완에 관하여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을 보완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술의 보완을 위해서 **갑**과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보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6 장 실시권의 설정 등록 등

제19조(실시권의 설정 등록) ① **갑**은 제1차분의 착수기본료의 수령 후 **을**의 실시권 설정등록에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실시기간 중 일방의 본 기술의 양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는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본 요청은 계약 후 60일 이후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20조(실시권 이전) ① **을**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제어하기 위해 제3자에게 본 기술의 실시권을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명칭의 사용)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특허표시) 을은 본 기술에 관한 특허품 또는 특허품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제23조(품질관리) ① 을은 특허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근무시간 중 갑이 고장 및 공정, 특허품을 검사할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부품 또는 특허품을 제조하는 하도급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공장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약의 종료 등

제24조(계약의 종료)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 (또는 6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7조의 비용지급을 을과 사전 협의 없이 지연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서상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기술이전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에 상품판매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4. 을이 제8조의 제품 생산 개시 일을 통보하지 않거나, 생산 개시일 전이라도 본 기술의 상업화를 포기하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5.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술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2. 갑이 제10조에 의거 증빙자료 등을 요청한 후 을이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갑이 제11조에 의거 조사통보를 한 후 을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4. 을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 · 합병될 경우 또는 회사청산,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7조의 매출정률사용료는 해지 시까지의 실적에 의하되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제3자를 실시권자로 재선정할 수 있으며 재선정된 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갑은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시까지 취득한 제반자료를 필요에 따라 갑에 반환케 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갑과 을은 제4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5조(계약 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을은 어떠한 이유로든 본 기술 및 관련 상표, 상호를 실시,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일부무효의 효과) ① 본 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어느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일 경우에는 그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은 본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조건 또는 조항이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으로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그 조건 또는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27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을의 생산능력이 제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을이 본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거나 을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본 기술의 실시를 제3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통상실시권 허여의 경우에 단서 적용>

제 8 장 분쟁 해결

제28조(분쟁해결)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9조(침해소송) ① 본 계약의 기술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일방이 제3자에게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 사실을 타방에게 알리고 모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단, 을이 제3자의 권리침해를 인지하고 갑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가 어느 일방을 당사자나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일방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소송이나 청구관련 모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배상) 갑과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불가쟁) 을은 본 계약에 관련된 기술의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지 아니한다.

제32조(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된다.

제33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제거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면책) 갑과 을에 의한 본 계약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해 을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의 지불을 포함하여 을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5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갑과 을 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이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36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 (또는 갑의 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별 첨 : 기술이전 세부추진 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성명 : 청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인)
	주소 :	

(을)	성명 :	(인)
	주소 :	

연구책임자	성명 :
	주소 :